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간 비행장 사용협정(안)

기	본	1962.
체결	(개정)	1963.01.08.
개	정	1973.05.01.
개	정	1977.06.14.
개	정	1983.05.13.
개	정	1985.03.11.
개	정	1986.10.01.
개	정	1988.08.31.
전문	개정	1990.05.30.
개	정	1991.11.20.
개	정	1994.01.27.
개	정	1998.07.31.
개	정	2008.05.09.
개	정	2010.12.27.
개	정	2014.07.24.
전문	개정	2017.12.15.
개	정	2020.06.26.

국방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간 비행장 사용협정(안)

제1조(목적) 이 협정은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장차 사용될 국내 항공시설을 군항공기 또는 민간항공기가 합리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협정에서 "이·착륙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을 말한다.

② 이 협정에서 "민간비행장"이라 함은 항시 군항공기 이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국토교통부 관할하의 공항을 말한다.

③ 이 협정에서 "군비행장"이라 함은 항시 군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국방부 관할하의 비행장을 말한다.

④ 이 협정에서 "민간항공기"(이하 "민간기"라 한다)라 함은 「항공안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항공기 등록을 필한 항공기로서 「항공사업법」 제7조, 제1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기타 자가용 항공기를 말한다.

⑤ 이 협정에서 "국가기관등항공기"라 함은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자연공원법 제44조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2. 산불의 진화 및 예방
3.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4.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⑥ 이 협정에서 "군항공기"라 함은 국방부 관할하의 항공기로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조종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 ⑦ 이 협정에서 "항행안전시설"이라 함은 유선통신, 무선통신, 불빛, 색채 또는 형상(形象)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⑧ 이 협정에서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라 함은 국제·국내·소형항공운송사업체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 ⑨ 이 협정에서 "정기편 운항"이라 함은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 ⑩ 이 협정에서 "부정기편 운항"이라 함은 제9항 외의 항공기 운항을 말하며, 정기편 운항의 계절적 수요 등 일시적 수요증가를 위해 정기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가 군비행장을 주1회 이상 4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 증편 운항하는 것을 포함한다.
- ⑪ 이 협정에서 "일시사용"이라 함은 군항공기 또는 항공운송사업용 외 민간기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있는 사용목적으로 사용 공항을 비정기적(비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⑫ 이 협정에서 "장기사용"이라 함은 군항공기 또는 항공운송사업용 외 민간기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있는 사용목적으로 정기적(주기적) 사용을 위해 사용 공항에 정치장을 두고 2주 이상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 ⑬ 이 협정에서 "민항전용시설"이라 함은 민간기가 장기적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계류장과 여객청사, 화물청사, 주차장 등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이 구비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한 민간의 단체 또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⑭ 이 협정에서 "계류장"이라 함은 공항 내에서 여객 승하기, 화물·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 ⑮ 이 협정에서 "대규모 보수공사"라 함은 제3조제2항 공항의 활주로, 유도로 등 시설 개량(일상적 유지보수 제외)이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
- ⑯ 이 협정에서 "초도 현장지휘통제"라 함은 민항기 사고 발생 시부터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후 현장지휘 및 통제권한 이양 시까지를 말한다.

제3조(군항공기 및 민간기의 이용 가능한 비행장의 지정) ① 군항공기가 이용 가능한 민간비행장은 김포, 제주, 울산, 여수, 인천, 양양, 무안 및 울진비행장이다.

②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및 장기사용 민간기가 이용 가능한 군비행장은 민항전용시설이 있는 광주, 사천, 김해, 원주, 대구, 청주, 포항이다.

③ 본조 제2항 이외의 군비행장에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가 신규 취항하거나 민간기가 해당 군비행장을 장기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당군 본부 및 기지, 민간기 사용자간 민항전용시설의 설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 민간기가 국방부 관할 군비행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운항승인을 얻는다.

제4조(제규정의 이행의무)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군비행장 및 민간비행장을 사용함에 있어 **군비행장 및 민간비행장** 운영상의 제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이용한계) 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하여 관할 비행장에 있어서 상호간 다음의 시설에 대한 이용과 이를 위한 업무를 제공한다.

1. 활주로 및 유도로(조명시설을 포함한다)
2. 항행안전시설
3. 계류장 (조명시설을 포함한다)
4. 군사상 또는 접객에 필요한 건물 및 용지
5.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제반업무
6. 비상사고 처리업무
7. 기타시설 및 업무

② 기존 군비행장에 민간기가 신규로 취항할 경우에는 민간시설 설치

전 또는 민·군 공동사용 공항을 신설할 경우에는 공사 착수 전에 제1항의 시설이용 한계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간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소요되는 장비, 시설 및 인력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지별 사용 합의서에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고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설치 및 보수) 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상호 허용된 구역 내에 민간항공 또는 군항공을 위한 항행안전시설 및 이를 위한 건물과 여객청사, 화물청사 및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을 보강 또는 개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 또는 시설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수도, 전기료 등을 포함한다)는 이용 또는 시설한 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 보수의 직접적 원인이 민간기의 이용에 기인된 때에는 국토교통부가 부담한다.

③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의 일상적 유지보수비 분담비율 및 세부집행 절차는 각 기지부대장과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장 및 한국공항공사 지사장간의 협정에 따라 정하며, 일상적 유지보수비 분담비율 산정 및 운영은 별표 1 제3항에 따라 적용한다.

④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의 대규모 보수공사는 사업별로 각 기지부대장과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장 및 한국공항공사 사장간에 사업계획, 사업추진 주체, 소요예산 분담 등에 관하여 별도 협정을 체결 후 시행한다.

⑤ 국토교통부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행장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포장평가를 시행한다.

제7조(배상) ① 민간기와 군항공기 및 기타 장비의 사고로 인하여 시설, 장비 또는 인명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에서

동일 비율로 구성되는 합동조사반이 사고의 원인 및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상호 배상하여야 하며, 사고 원인이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기 이외의 민간기 및 국가기관등항공기로부터 기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책임하에 민간기 및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소유자(외국국적 항공기는 임차자 또는 운용자)로 하여금 배상토록 한다.

제8조(원상회복의 의무) 국방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 차용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군비행장 및 민간비행장 운항 절차) ①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군비행장 운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의 군비행장 정기편 노선허가 신청은 운항 예정 4주전에 「항공사업법」 제10조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3호가 내지 다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민항 전용시설이 있는 군비행장에 한하여 매년 2회 동·하계 정기항공운송 사업계획 조정 시 국방부장관은 군비행장 운항을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승인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동·하계 정기항공운송사업 계획을 운항 예정 4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나. 기 승인된 정기항공 운송계획을 변경(증편)하고자 할 때는 운항 예정 2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한다.

다. 기 승인된 정기항공 운송계획의 일부를 단순변경(운항시간, 기종, 요일 변경 등)하고자 할 때는 운항 예정 1주 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당해 기지부대장에게 요청한다.

3. 부정기편 항공기는 운항예정 1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당해 기지부대장에게 요청한다. 다만, 기상악화에 따른 체류객 특별수송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일에 요청할 수 있다.

4. 상기 각 목에 의해 기 승인된 범위 내에서 항공기의 부득이한 사정(항공기 결함, 악기상 등)으로 운항시간 또는 기종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항공청장(또는 항공기 운영자)과 당해 기지부대장간 협의한다. 다만, 항공기 비상으로 즉시 착륙이 요구될 시는 인근 군비행장에 무선통보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국제선 항공기가 김포 또는 제주 국제공항의 기상악화 또는 활주로 폐쇄 등으로 착륙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김해 또는 청주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다.

② 항공운송사업용 외 장기사용 민간기에 대한 군비행장 운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사용 민간기는 제3조제2항의 군비행장 중 사용을 원하는 군비행장을 대상으로 군비행장 운항신청서를 제출하여 2년 단위로 장기사용 운항등록을 요청한다. 이 때, 장기사용 민간기는 한국공항공사와 협조하여 해당 군비행장 민항전용시설 내 정지장을 사전 확보하고, 그 내용을 운항신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 단위로 장기사용 민간기의 군비행장 장기사용 운항등록 요청을 홀수년도 10월 30일까지 종합,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각 군의 운항등록 검토 및 승인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2년 단위 등록만료 전 재등록 시 변경 사항만 첨부하고, 기 승인된 동일 기종의 항공기를 추가 시에는 등록 부호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가. 군비행장 운항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항공기 사진 및 제원(별지 제2호 서식)

다. 장착 무전기 제원(별지 제3호 서식)

3. 2년 단위로 장기사용 운항 등록된 항공기는 항공기 운영자가 운항 전일(근무일 기준) 12:00시까지 당해 기지 부대장에게 비행계획서를 제

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운항한다. 단, 제3조제2항의 군비행장에서는 필요 시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세부 협정을 체결하여 당해 비행장을 사용하는 항공기 운영자가 제출한 비행계획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권한 대행자가 종합하여 당해 기지부대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4. 2년 단위로 장기사용 운항등록하지 못한 항공기는 항공기 운영자가 운항 예정 4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규 장기사용 운항 등록을 요청하고, 승인을 얻은 후 본항 제3호의 절차에 따라 운항한다. 이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 등록요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국방부장관은 검토 및 승인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항공운송사업용 외 일시사용 민간기에 대한 군비행장 운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사용 민간기는 사용을 원하는 군비행장을 대상으로 군비행장 운항신청서를 제출하여 2년 단위로 일시사용 운항등록을 요청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 단위로 일시 사용 민간기 군비행장 운항등록 요청을 흡수년도 10월 30일까지 종합,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각 군의 운항등록 검토 및 승인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2년 단위 등록만료 전 재등록 시 변경 사항만 첨부하고, 기 승인된 동일 기종의 항공기를 추가 시에는 등록 부호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가. 군비행장 운항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항공기 사진 및 제원(별지 제2호 서식)

다. 장착 무전기 제원(별지 제3호 서식)

3. 2년 단위로 일시사용 운항 등록된 항공기는 항공기 운영자가 운항 전일(근무일 기준) 12:00시까지 당해 기지 부대장에게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운항한다.

4. 2년 단위로 운항등록하지 못한 항공기는 항공기 운영자가 운항 예정 4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규 일시사용 운항등록을 요청하고, 승인을 얻은 후 본항 제3호의 절차에 따라 운항

한다. 이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 등록요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국방부장관은 검토 및 승인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등의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하는 국가기관등항공기와 비행점검 목적의 국토교통부 소속 비행점검기는 운항등록 없이 당해 기지 부대장에게 운항 전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운항할 수 있다.

⑤ 비사업용 외국 국적 항공기(「항공안전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외국 의 군·세관 또는 경찰의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포함)의 일시 운항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비사업용 외국 국적 항공기로 민간비행장을 일시 운항하려는 자는 운항예정일 2일 전까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외국항공기 운항허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비사업용 외국 국적 항공기로 군 비행장을 일시 운항하려는 자는 운항예정일 16일 전까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외국항공기 운항허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국토부장관(지방항공청장)은 국방부장관(기지부대장)에게 운항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의전 및 지상조업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외교부서는 추가적으로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⑥ 평시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군항공기가 민간비행장을 운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대장이 해당 지방항공청장에게 운항목적, 기간 등 제반 사항을 운항 3일 전까지 신청한다. 단, 작전상 긴급 시는 1일 전까지 통보한다.

제10조 (군비행장 및 민간비행장 운항승인 취소 및 변경 절차) ① 국방부장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사용 민간기, 제3항에 따른 일시사용 민간기의 군비행장 운항승인 허가 취소나 군비행장 운항승인 변경(운항편수, 기종 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일 4

주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1, 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이 승인된 항공기가 취항중지 및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를 상호간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비행장 운항승인 항공기에 대한 변동사항(항공기 사용불능 등)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11조(군비행장 및 민간비행장 시설사용 절차) ① 민간기에 대한 군비행장 시설사용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2항의 군비행장을 이용하는 민간기는 보안 및 작전 운영상 민항전용 계류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2. 군비행장 운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국제행사 참여 등 부득이한 사정 및 공적인 사유로 민간기가 제5조제3호의 군전용 계류장을 일시사용(최대 한 달 이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지에 일시사용 운항 등록된 민간기에 한하여 사용 예정 1주 전까지 사용시설, 일시, 목적 등을 포함한 계류장 사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당해 기지부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운항 전일(근무일 기준) 15:00까지 비행계획서 제출 시 해당 승인내용을 포함한다.

② 평시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군항공기가 민간비행장의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부대장이 해당 지방항공청장에게 시설사용 목적, 기간 등 제반사항을 사용 3일 전까지 신청한다. 단, 작전상 긴급 시는 1일 전까지 통보한다.

제12조(군비행장 및 민간비행장의 운항 및 시설사용 중지) ① 평시 군 작전 및 보안 등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군비행장 운항 및 시설사용을 중지시켜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의 일방적 서면 통보에 의하여 그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군비행장 및 특정 민간비행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통제할 수 있으며, 민간비행장의 각종 시설을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운송사업용 민간기가 취항하는 군비행장 및 민간비행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즉시 이의 대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군사시설의 보호) ① 이·착륙 및 훈련비행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시설 중심으로 반경 5마일, 고도 1,000미터 이내의 상공비행과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을 일체 금지한다.

② 이·착륙 시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항공기의 창문차폐에 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협정에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금지 또는 경고내용을 민간기 소유자로 하여금 여객에게 주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내선 시간표에 군사시설 사진촬영 금지 안내문 삽입
2. 탑승, 출발 전 안내 방송 시 사진촬영 금지 방송
3. 객실 승무원에게 이·착륙 시 사진 촬영 통제 임무 부여

제14조(토지사용료 등) ① 군항공기가 민간비행장, 국가기관등항공기가 군비행장의 시설 또는 용지를 이용할 때에는 토지사용료 및 착륙료 등 항공기 이·착륙에 부수되는 요금을 상호 면제한다.

② 민간기가 군비행장을 이용할 때에는 토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징수한다.

③ 민간기가 군비행장을 이용함에 따른 착륙료·항행안전시설사용료·정류료·격납고사용료 및 조명료 등 시설사용료는 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지방항공청장) 또는 한국공항공사사장이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착륙료 등 항공기 이·착륙에 부수되는 요금징수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운항자료 교환) 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제5조의 시설 유지비 산출에 필요한 군항공기·민간기 이·착륙자료를 상호 정확히 교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는 민간기 조명료 산정에 필요한 조명시설 점·소등 시간을 국토교통부에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항공기 사고시의 긴급구조 활동) ① 항공기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상호긴급 구조구난 활동을 하여야 하며, 초도 현장지휘통제는 민간비행장에서는 지방항공청장(한국공항공사 사장)이, 군비행장에서는 당해 기지부대장이 수행한다. 단, 공항 소방대를 운영 중인 기지는 기지사용합의서에 의한다.

② 항공기의 사고처리 현장지휘통제 책임한계 및 통제 권한 이양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 협정에 의한다.

③ 항공기 사고 발생 시 해당 비행장 운영책임자는 합동사고 조사반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군비행장에서의 긴급구조/사고처리 훈련은 군·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 협정에 의한다.

제17조(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력) 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기에 대한 안전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협력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민간기가 취항하는 군비행장에 대하여 민간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연 1회 또는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2. 민간기 사고예방을 위한 항공안전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군 비행장에서 민간기 운영을 위한 항공교통업무 및 공항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군 작전을 고려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18조(세칙) ① 이 협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현지실정에 부합하도록 제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군비행장에서는 당해 관할 부대장 또는 군 기지부대장과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장(또는 권한대행자) 및 한국공항공사 지사장간에 세부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용 승인된 구역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통로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호 업무연락을 위한 유선 전화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민간기를 위한 종사자 및 승객출입의 취급절차에 관한 사항
4. 민간기의 운항기종, 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시간의 변경통보 절차에 관한 사항
5. 민간기의 비행계획서 제출업무에 관한 사항
6. 신분확인서, 재료 및 공용품 반·출입 확인서 및 영문출입증의 교부절차에 관한 사항
7. 사용 승인된 구역의 보안, 경계, 활주로 제조, 제설작업, 조류퇴치 활동, 긴급 구조체계 및 기타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8. 이·착륙 등 군비행장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시설의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9. 해당 군비행장에서 이·착륙 민간기의 창문차폐에 관한 사항
10. 항공기 사고시의 긴급구조 활동 중 초도 현장지휘통제 책임한계 및 통제 권한 이양, 긴급구조/사고처리 훈련에 관한 사항
11. 기타 세부적인 절차가 필요한 사항

제1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협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각각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군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이 협정 및 제19

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협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군비행장 운항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운항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자에 대하여는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21조(보칙) ① 한국공항공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군비행장의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 유지, 보수 및 항공기 사고처리업무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② 이 협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2월 전에 제의하여야 한다.
- ③ 이 협정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 1통씩을 보관한다.

부 칙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협정은 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협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협정 발효 이전부터 이미 이용 또는 사용 중인 군비행장 및 민간 비행장에 체결된 세부협정은 이 협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협정의 폐지) 2008.5.9.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간 체결한 비행장 사용협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4. 7. 24.)

제1조(시행일) 이 협정은 2014.7.24.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협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협정 발효 이전부터 이미 이용 또는 사용 중인 군비행장 및 민간 비행장에 체결된 세부협정은 이 협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협정의 폐지) 2010.12.27.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간 체결한 비행장 사용협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7. 12. 15.)

제1조(시행일) 이 협정은 2017.12.15.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협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협정 발효 이전부터 이미 이용 또는 사용 중인 군비행장 및 민간 비행장에 체결된 세부협정은 이 협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협정의 폐지) 2014.7.24.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간 체결한 비행장 사용협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20. 06. 26.)

제1조(시행일) 이 협정은 2020.06.26.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협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협정 발효 이전부터 이미 이용 또는 사용 중인 군비행장 및 민간 비행장에 체결된 세부협정은 이 협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협정의 폐지) 2017.12.15.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간 체결한 비행장 사용협정은 이를 폐지한다.

2020. 06. 26.

국 방 부 장 관

정 경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김 현



(별표 1)

민간기 이·착륙료 등 징수절차

1. 착륙료 등의 징수

가. 제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군비행장의 한국공항공사 관할구역의 착륙료·항행안전시설사용료·정류료·격납고사용료 및 조명료 등의 공항시설 사용료는 공항시설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징수한다.

나. 제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군비행장의 한국공항공사 관할 외 구역 및 제3조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군비행장을 민간기가 이용하였을 때에는 군기지 부대장이 통보한 민간기 운항실적에 의하여 공항시설법 등에서 정하는 요금을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한다.

다.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장은 군비행장의 민간기 운항실적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년도 1월 31일 까지 당해년도의 징수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2. 피해보상

제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군 기지의 국유재산 피해에 대하여는 항공기 소유자가 원상복구에 필요한 설비를 부담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치한다.

3. 시설보수비 분담비율 산정 및 청구·납부

가. 군비행장별 민·군간 시설보수비 분담비율은 시설유지 보수 내용에 따라 당해 비행장 활주로 포장설계 기준 항공기를 기준 군항공기·민간기의 연간 이륙 횟수에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등가 이륙횟수를 산정한 비율로 하거나, 군 항공기·민간기의 이·착륙 횟수의 비율로 한다.

(1) 기종별 바퀴하중

기종	기어형태	바퀴하중(TON)	기종	기어형태	바퀴하중(TON)
F-4	S	13.3	CARV-11	S	2.2
F-5	S	6.8	A-321	T	18.5
F-15	S	17.4	B-737	D	14.0
F-16	S	7.3	B-777	TT	22.7
F-35	S	15.1	B-767	DT	19.1
T-50	S	6.6	A-220	D	14.0
TA-50	S	6.9	A-330	TT	22.7
FA-50	S	7.1	A-300	DT	19.8
KT-1	S	1.1	B-747	DDT	20.7
KA-1	S	1.4	A-350	DT	31.4
CN-235	ST	3.7	B-787	DT	29.4
C-130	ST	16.6	MD82	SD	16.1
P-3	D	11.3			

(2) 항공기 각형 환산계수



원항공기 각형	환산하는 항공기 각형	환산계수
Single wheel	Dual wheel	0.8
Single Wheel	Dual tandem	0.5
Dual wheel	Dual tandem	0.6
Double Dualtandem	Dual tandem	1.0
Dual tandem	Single wheel	2.0
Dual tandem	Dual wheel	1.7
Dual wheel	Single wheel	1.3
Double dual tandem	Dual wheel	1.7

* 등가년간 이륙횟수 산출 공식

$$\text{Log } R_1 = \text{Log } R_2 (W_2 / W_1)^{\frac{1}{2}}$$

R_1 : 설계항공기의 등가년간 횟수

R_2 : 설계항공기로 환산한 대상 항공기의 연간 이륙횟수

W_1 : 설계항공기의 바퀴하중

W_2 : 대상항공기의 바퀴하중

* 근거 : FAA AC NO 150/5320-6E

나. 군비행장별 시설유지 보수비용 산정 및 청구·납부는 당해 기지부대장과 한국공항공사 지사장간 협의에 의한다.

다. 일상적 시설유지보수비 분담금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국고 납입한다.

라. 시설유지보수비의 분담금은 아래의 분야별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1, 3번의 유지보수분야에서는 한국공항공사가 보유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연번	유지보수분야	납입금 산정 대상	산정기준
1	활주로·유도로 포장/노면보수, 활주로 고무바퀴자국 제거/표지선 도장	자재	등가이륙횟수
2	항공등화 보수, 조류퇴치	자재	이·착륙횟수
3	삭초, 살충제살포, 제설, FOD제거	인력·자재	이·착륙횟수

마. 각 공항별 등가이륙횟수 또는 이·착륙횟수에 의해 산정된 분담금은 기지부대장과 한국공항공사 지사장간 세부협정을 체결하여 집행하며 분담비율 및 비용 산정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공유한다.

(별표 2)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력

(제17조 제1항 관련)

1. 목적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는 민간기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 필요로 하는 세부 협력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민간기 운항 관련 국방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적용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

2) 민간기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항운영업무

나. 본 별표에 명시한 민간기 안전관리 관련 용어는 「항공안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본 별표에 따라 국방부에서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 및 정보는 「국방보안 업무훈령」 및 각 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범위 또는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

3. 협력 사항

가. 민간기 사고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나. 항공안전 정책·법령·제도 등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라.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 위험도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마.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바.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연구·조사·개발 등에 관한 사항
사.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상호 인정하는 그 밖의 사항 등

4. 협력사항 별 세부내용

가. 민간기 사고 등에 관한 정보공유

- 1) 군 비행장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의 발생통보
- 2) 항공안전장애의 발생정보 공유

가)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통보한 사항에 대한 조치과정에서 식별하게 된 각종 안전정보를 국방부장관과 공유한다.

나. 항공안전관리 정책, 법령, 제도 등의 수립 및 운영

- 1) 국토교통부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정책·법령·제도 등의 수립·운영 과정에서 국방부와 상호 협력한다.
- 2) 국방부는 민간기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 기준, 절차 등에 대한 표준화, 국토교통부와의 상호 유기적인 안전관리 정책·법령·제도 수립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한다.
- 3)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 정책·법령·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며, 제5호에 따른 항공안전협의회에서 관련 실무논의를 한다.

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감독 등

- 1) 국방부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이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2) 국토교통부는 국방부가 1)에 따라 운영 및 관리·감독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하는 안전관리시스템과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한 협력을 한다.

가) 자체 규정·절차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항공안전보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국가의 안전목표·공동안전지표의 반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평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마) 관련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바)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3) 국방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 공동안전지표에 관한 사항 및 민간기 관련 위해요인 현황을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소속기관들로부터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와 공유한다.

4) 3)의 실시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다목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라. 위해요인 식별·위험도 평가 및 개선조치

1)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다목에 따른 업무 관련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평가 및 개선조치를 위한 협력을 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마.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 공유

1)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는 국가 항공안전목표 달성 등 효과적인

국가항공안전관리를 위해 다음의 민간기 관련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다.

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활용한 각종 분석결과에 관한 사항

나)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의무보고, 항공안전자율보고 및 이에 대한 분석결과

다)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등록 및 감항성 유지에 관한 사항

라) 안전관리시스템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안전보고에 대한 분석결과

마)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등 각종 통계자료

사) 제2호가목에 종사하는 인력 또는 종사자 관련 통계

아) 국제기구가 회원국에 공유하는 안전 관련 자료

자) 공유가 필요한 것으로 상호 합의한 그 밖의 사항 등

2) 1)에 따른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공유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3) 1)에 따른 사항은 공식 회의, 제5호에 따른 협의회,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바.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조사·개발 등

1)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는 민간기 운항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연구·조사·개발 등에 관한 협력을 할 수 있다.

2) 1)에 따른 결과로 도출된 결과는 목적(민간기 안전증진) 외 용도로 오·남용하지 않는다.

5. 협의회 운영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는 본 별표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 관련 세부사항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에 따라 실시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등 보안업무에 대한 제반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군비행장 운항 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 성 명	
주 소					
노선의 기점 기항지 및 종점				국 적	
사용기간	항공기종	등록기호 및 무선국 호출번호	사용구분 (장기/일시)	사용비행장	항공기 정지장
			<input type="checkbox"/> 장기 <input type="checkbox"/> 일시		<input type="checkbox"/> 공공목적 <input type="checkbox"/> 인원수송 <input type="checkbox"/> 연료보급 <input type="checkbox"/> 훈련비행 <input type="checkbox"/> 기 타 ()
교체공항					
주·부 조종사 인적사항					
탑승자 인적사항					
첨부 : 사용 항공기 장착 무전기 종류 및 제원 1부					
상기와 같이 군비행장 운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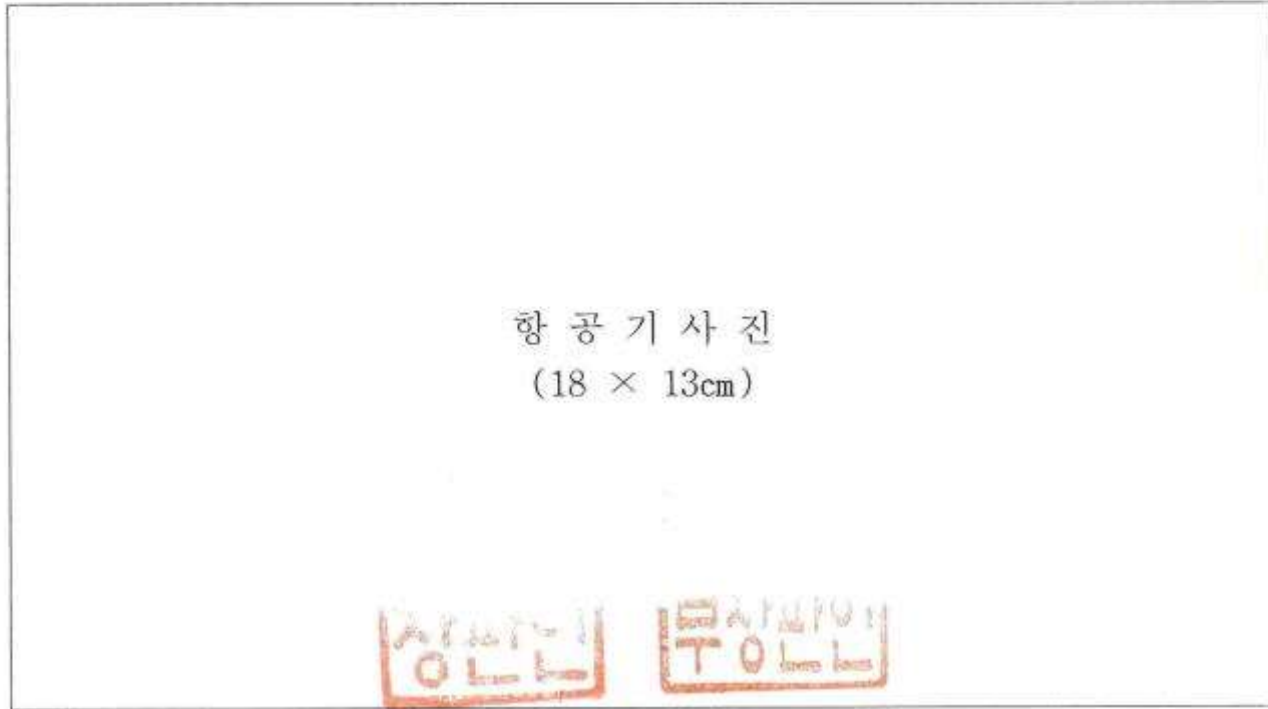
※ 항공운송사업의 경우 주·부조종사 및 탑승자 인적사항은 제외

※ 시험비행항공기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감함증명 포함

(별지 제2호 서식)

항공기 사진 및 제원

(사 진)



(제 원)

형 식		자 체 중 량	Kg
제작회사		최대이륙중량	Kg
기 장	M	최대착륙중량	Kg
기 폭	M	최대이륙거리	M
기 고	M	최대착륙거리	M
주 른 폭	M	항 속 거 리	Km
순항속도	Knots	좌 석 수	승무원 명 승 객 명
순항고도	Feet	연 료 량	G/A

(별지 제3호 서식)

장착 무선기 제원

구 분	종 류	형 식	대 수	주파수 범위
통 신 용	VHF 송수신기			
	UFH 송수신기			
	HF 송수신기			
	구명무선기			
	기 타			
항 법 용	방향탐지기			
	계기착륙장치			
	수신기			
	VOR 수신기			
	DME 수신기			
	트랜스폰다			
	기상레이더			
	기 타			

군비행장 계류장 사용 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 성 명	
주 소			
노선의 기점 기항지 및 종점		국 적	
사용일시	항공기종	사용비행장	사용시설(계류장) 사용목적
주·부 조종사 인적사항			
계류장 사용자 인적사항			
<p>상기와 같이 군비행장 계류장 사용을 신청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신 청 자 (인)</p>			